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

◎ 대통령 제 13,700 호

◇ 住宅建設基準等에 관한 規程 改正理由

住宅團地가 大型化 · 超高層化되고 設備가 多樣化되는 등 住居與件이 급속히 變화함에 따라 그 附帶施設 · 福利施設 등의 施設基準을 개선 · 補完함으로써 편리하고 適切한 住居環境이 조성되도록 하고, 그 밖에 現行規定의 運用上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 · 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青少年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福利施設의 범위에 青少年施設를 추가하며, 5千世帶 이상의 大規模 住宅團地에는 住居運動施設 및 生活體育施設 외에 青少年施設를 의무적으로 設置하도록 함(令 第 5條 · 第 53條 第 3項).
- 나. 共同住宅를 建設할 경우 住居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驚音 · 公害 및 각 종 危險誘發施設인 工場이나 危險物貯藏 및 處理施設 등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建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施設物 중 公害가 적은 一般工場이나 移轉計劃이 확정된 工場에 대하여는 이러한 制限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 9條 第 2項).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제 2호중 “탁아시설”을 “보육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 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의 2. 청소년시설(생활권청소년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 6조제 1항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항제 6호중 “탁아시설”을 “보육시설”로 하며, 동조제 3항중 “특별주택사업구역안에서의

주택등”을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로 한다.

3. 일반목욕장으로서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

제 9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 · 어린이놀이터 · 의료시설 · 유치원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 및 노인정(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

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해공장(공업배기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공해공장을 제외한다)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제 11조 중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도서실·입주자집회소·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민공동시설(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 12조 제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김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7층이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화물용승강기에 같은하여 인양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6조 제 2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 18조 제 1항 중 “내구성이 있는 금속제(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 또는 도금이나 방청등의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또는 철근콘크리트를”을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로 한다.

제 20조의 제목 “(수납공간등)”을 “(창고등)”으로 하고, 동항 본문 중 “수납공간을”을 “창고를”로, “수납공간의”를 “창고의”로 한다.

제 21조 제 2항 중 “분뇨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 24조 중 “건축법 제 10조 내지 제 18조, 제 23조 내지 제 25조, 제 35조 내지 제 37조”를 “건축법 제 38조 내지 제 43조·제 55조·제 56조 및 제 59조”로 한다.

제 30조 제 3항 중 “제 1항 및 제 2항”을 “제 1항 내지 제 3항”으로 하여 동항을 동조 제 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설·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5조의 제목 “(공동저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하고, 동조 제 1항 중 “전문기술용역업체의 기술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문기술용역업체의 기술진단 또는 그 지역의 지하 수량·수질 등을 참작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 제 2항 중 “이를 2개이상으로 구획하여 청소등 관리가 쉽도록하여야 하며”를 “제 43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 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0조 제 2항 본문 중 “적산전력계를 각 세대의 현관밖의”를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밖의”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적산전력계를 현관안에”를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로 한다.

제 42조의 제목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으로 하고, 동조 제 1항 중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를”을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선로용 배관을”로 한다.

제 43조 제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조 제 5항 중 “제 1항 내지 제 4항”을 “제 1항 내지 제 5항”으로 하여 동항을 동조 제 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내구성이 있는 도금·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제 46조 제 3항 중 “탁아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을 “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 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9조(일반목욕장)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의 면적은 매세대당 0.5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제 50조 내지 제 5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최소시설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을 당해 일반목욕장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 50조 제 1항 중 “면적(제 4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면적”으로 한다.

제 51조 제 1항 중 “면적(제 4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면적”으로 한다.

제 52조 제 1항 본문 중 “유치원·새마을유아원 또는 탁아시설”을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과 보육시설”로 하고, 동항 단서 중 “탁아 또는 유아교육시설”을 “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하며, 동조 제 2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치원등은 학교보건법 제 6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할 것

제 53조의 제목 “(주민운동시설)”을 “주민운동시설등”으로 하고, 동조 제 3항 중 “5천세대를 넘는 5천세대마다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생활체육시설”을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과 청소년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등”이라 한다)”로 하고,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이상인 생활체육시설”을 “바다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이상인 생활체육시설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로부터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55조 제 3항 중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상의 도서실(독서실을 포함한다)·입주자집회소·거주자의 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주민공동시설”로 한다.

제 61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업표준화법 제 15조 및 제 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를 받은 상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주택자재의 등록품목중 3. 콘크리트 제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조립식부재(벽판·바닥판·지붕판·기둥·보·계단·기타 이와 유사한 주요구조 부용부재)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벽판·바닥판·지붕판)
-----------	--

[별표 3]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기준중 업종별란의 2란·3란 및 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7란 라의 (4)중 “압축강도시험기(60톤이상)”를 “압축강도시험기(60톤이상) 또는 휨강도시험기(300킬로그램이상)”로 한다.

2. 시멘트 가공제품(시멘트벽돌·속빈시멘트블록·보통시멘트기와) 생산업	<p>가. 배합및 혼연시설(보통시멘트 기와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p> <p>나. 양생시설 유압기 1대 또는 진동기 3대마다 다음 중 1이상의 설비 (1) 중기양생설 : 60제곱미터이상 (2) 수중양생수조 : 120제곱미터 이상 (3) 양생용 스프링클러 : 9개소 이상 (4) 다층 건조양생설(보통시멘트기와만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 30제곱미터이상 (5) 기타 양생능력이 (1)내지 (4)와 동등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설비</p> <p>다. 기타시설 (1) 용지 : 1천500제곱미터이상 (2) 시험실 : 20제곱미터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60톤이상) : 1대상. 다만, 보통시멘트 기와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휨강도시험기(300킬로그램이상)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다.</p>
--	--

3. 콘크리트제품	<p>가. 배합 및 성형시설 (1) 벳차프렌트설비 : 1식 (2) 파렛트 및 주형 : 1식 (3) 철근가공설비 : 1식</p> <p>나. 양생시설 중기양생설비 : 1식</p> <p>다. 운송시설 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설비</p>
-----------	---

1.식					
라. 기타시설					
(1) 용지 : 9천제곱미터이상 (2) 시험실 : 30제곱미터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 (100톤이상) : 1대이상 (4) 스트롱후레임시험기 (100톤이상) : 1대이상					
경량 기포 콘크 리트 조립 식부 재	가. 배합 및 성형시설 (1) 배합 및 혼합설비 : 1식 (2) 성형설비 : 1식 (3) 절단 및 마감설비 : 1식				
	나. 양생시설 오토클레이브양생설비 : 1식				
	라. 기타시설 (1) 용지 : 9천제곱미터이상 (2) 시험실 : 30제곱미터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 (60톤이상) : 1대이상 (4) 패널의 휨강도시험기 (20톤이상) : 1대이상				
4. 창호 제품 (창호 및 틀) 생산업	목제 창호 가. 가공 및 조립시설 (1) 절단기 : 1대이상 (2) 건구조립기 : 1대이상 (3) 자동대패기 : 1대이상 (4) 끌기제 : 1대이상				
	나. 건조시설 (1) 건조설 : 60제곱미터이상 (2) 보일러등 건조를 위한 기기 : 1대이상				
	다. 기타시설 용지 : 900제곱미터이상				
콘크 리트 창호	가. 배합 및 혼연시설 (1) 막서 : 1대이상 (2) 형틀 : 1대이상 (3) 진동기 : 1대이상				
	나. 양생시설 (1) 보일러 : 1대이상 (2) 수중양생수조 : 60제곱미터이상 (3) 중기양생설 : 30제곱미터이상				
	다. 기타시설 용지 : 1천500제곱미터이상				
알루 미늄 창호	가. 틀재생산시설(창호를 가공 및 조립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예열설비 : 1식 (2) 압출설비 : 1식 (3) 열처리설비 : 1식				
	나. 가공 및 조립시설(틀재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절단기 : 1대이상 (2) 연마기 : 1대이상 (3) 용접기·천공기 기타 가공 및 조립에 필요한 설비 : 1식				
다. 기타시설	용지 : 900제곱미터이상 다만, 창호를 가공 및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가. 가공 및 조립시설 (1) 절단기 : 1대이상 (2) 절곡기 : 1대이상 (3) 용접설비 : 1식 (4) 도금 또는 도장설비 : 1식			
철제 창호	나. 기타시설 용지 : 300제곱미터이상	가. 틀재생산시설(창호를 가공 및 조립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재료혼합설비 : 1식 (2) 압출성형설비 : 1식			
	나. 가공 및 조립시설(틀재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용접기 : 1대이상 (2) 천공기 : 1대이상 (3) 기타가공 및 조립에 필요한 설비 : 1식	다. 기타시설 용지 : 1천500제곱미터이상. 다만, 창호를 가공 및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주택자재생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동력자원부고시제 1992-44호

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건축법 제7장, 건축법시행령 제7장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2년 7월 30일
동력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물중 신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냉식 전기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제(물·얼음 또는 포집화합물과 공용염동의 상변화 물질)에 냉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심야시간이외의 시간(이하 “기타시간”이라 한다)에 냉방에 이용하는 설비로서 이러한 냉열을 저장하는 설비(이하 “축열조”라 한다)·냉동기·브라인펌프·냉각수펌프 또는 냉각탑등의 부대설비(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축열조 2차축 설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빙축열식 냉방설비

나. 수축열식 냉방설비

다. 잠열축열식 냉방설비

2. “빙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얼음을 제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3. “수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물을 냉각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시간에 이를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4. “잠열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포집화합물(Clathrate)이나 공용염(Eutectic Salt) 등의 상변화 물질을 심야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 기타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5. “심야시간”이라 함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를 말한다.

6. “2차축설비”라 함은 저장된 냉열을 냉방에 이용할 경우에만 가동되는 냉수순환펌프·공조용순환펌프등의 설비를 말한다.

7. “전체축냉방식”이라 함은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의 전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

8. “부분축냉방식”이라 함은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의 일부는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

9. “축열율”이라 함은 통계적으로 년중 최대 냉방부하를 갖는 날을 기준으로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begin{aligned} \text{축열율}(\%) &= \\ &\frac{\text{“이용이 가능한 냉열량(Kcal)”}}{\text{“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Kcal)”}} \times 100 \\ 10. \text{“이용이 가능한 냉열량”} &\text{이라 함은 축열조에 저장된 냉열량중에서 열손실등을 차감하고 실제로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한다.} \\ 11. \text{“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text{이라 함은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를 말한다.} \end{aligned}$$

제 2장 냉방설비의 설치기준

제 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건축물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및 제 2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판매시설 또는 연구소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 또는 병원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4.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제 5조(냉방설비의 축열율)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냉식 전기냉방으로 설치할 때에는 전체축냉방식 또는 축열율이 40% 이상인 부분축냉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3장 축냉식전기냉방설비의 설계기준

제 6조(냉동기) ①냉동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6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냉동제조의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냉동기의 용량은 제 4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부분축냉방식의 경우에는 냉동기가 축냉운전과 방냉운전 또는 냉동기와 축열조의 동시운전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 7조(축열조) ①축열조는 축냉 및 방냉운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재질의 축냉재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 청소가 용이하고 부식이 안되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방청 및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축열조의 용량은 제 5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축열조는 내부 또는 외부의 용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축열조를 여러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관리 또는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축열조는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해야 하며, 맨홀등 점검을 위한 부분은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조(열교환기) ①열교환기는 시간당 최대 냉방 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열교환기는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부분은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축냉운전·방냉운전 또는 냉동기와 축열조를 동시에 이용하여 냉방운전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시기능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4장 보 칙

제 10조(냉방설비에 대한 운전실적점검) 냉방용전력수요의 첨두부하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년중 10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운전실적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축냉식 전기냉방기기) ①“축냉식 전기냉방기기”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한후 기타시간에만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소용량의 축냉식 냉방기기로서 이동형 냉방기 및 고정형 팩키지에어콘등을 말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축냉식 전기냉방기기에 대하여도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 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소요되는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축냉식 전기냉방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제 1항의 축냉식 전기냉방기기가 수용할 수 있는 냉방용량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최대냉방부하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 12조(적용제외) 동력자원부장관은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에 관한 국산화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6조 내지 제 9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운영제척) 이 고시에 정한 것 이외에 이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